

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 안건

일 시 : 2021. 3. 19.(금) 14:0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검토사항】

1	‘막걸리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2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3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의례·의식 및 전통지식 분야)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고사항】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계획 보고	공개
5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정상화 추진현황 보고	비공개
6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등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공개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21-02-001

1. ‘막걸리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및 전승자 인정조사(의례·의식 및 전통지식 분야)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 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21-02-004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를 격상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내용

1)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 제17583호*, 법률 제17708호**)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함
 - * 법률 제17583호(2020.12.8.개정, 2020.6.9.시행)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약칭 개정 및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 ** 법률 제17708호(2020.12.22.개정, 2021.6.23.시행) : 분과·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 사항 위원회 조사·심의로 간주, 보유자(단체) 인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위임 법령 상향(부령→대령)

2) 추진경과

- 무형문화재법 개정 계획 마련 : ‘20.2월
- 입법예고(2.24.~3.10.) 및 관계기관 협의(3.9.~)

3) 주요 개정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

- (시행령) 분과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정비
 - 위원 제척·회피사항에 해당안건을 ‘연구한 경우’삭제(안 제5조제1항)
 - * 관련연구자를 제척하는 것은 전문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분과위원회 3개 신설 및 운영 규정 마련(안 제7조)
- * 전통예능분과, 전통기술분과, 전통지식분과
-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 위원회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마련(안, 제4조의2, 안 제8조의2 신설)
- *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

○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 마련

- 보유자·보유단체에게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인정서를 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에게는 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 교부(안 제19조의3 신설)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신설)

○ (시행규칙) 인정서 서식 개정, 인정 확인서 발급 등

-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인정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3호·제4호서식)
- 인정서 교부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 인정 확인서 관련 서식 마련(안 별지 제7호서식 등)
- * 인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인정확인서, 인정확인서 발급대장

다)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에 관한 사항 상향

○ (시행령·시행규칙) 법률 개정에 따라 지정·인정 또는 지정·인정 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에 관한 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15조의2 신설)
- * 시행규칙 제4조(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고시)를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 삭제
-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에 관한 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2 신설)
- * 시행규칙 제8조(인정 또는 인정해제의 고시)를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 삭제

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

○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4) 향후계획

- 관계기관 협의('21. 3월말), 규제 및 법제처 심사('21. 4~5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21. 5월) 및 공포·시행('21. 6월)

- 붙임 1.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u>위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원회</u>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2. (생략)</p> <p>3. <u>위원이</u>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u>연구, 용역</u>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생략)</p> <p>② <u>당사자</u>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위원회에</u> 기</p>	<p>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p> <p>① ----- ----- ----- -, <u>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u>위원회</u>,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제7조의2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u>위원이</u> --- <u>위원회등</u>-----.</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용역</u>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u>----- ----- ----- <u>위원회등에</u> ---</p>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

----- 위원회등은 -----
----- . -----
----- 참여
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

----- .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2 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의2(합동분과위원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생략)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

-----.

②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

제8조의2(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
----- 위원회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위원회등-----

----- 위원회 등-----
-----.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신설>

<신설>

-----.

1. 위원회등-----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19조의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신 설>

<신 설>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19조의3 (인정서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를 각각 교부한다.

제33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
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
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
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신설 서식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성 명 :

생년월일 :

사 진

3.5cm×4.5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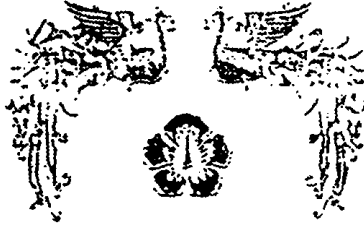
이 증서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증부에 기입함.

문화재청장 ○○○

직인

297mm×420mm[한지]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귀 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통령 ○○○

직인



이 증서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증부에 기입함.

문화재청장 ○○○

직인

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1. 국가무형문화재등의 명칭</p> <p>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p>	<p>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 ----- ----- ----- ----- -----</p>

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
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
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
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
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
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
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
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인정서 교부 및 재교부
등) ① 영 제19조의3-----

-----.

1. 명예보유자 인정서 : -----
2. 전승교육사 인정서 : -----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

② -----

--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
-----제출
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영 제19조의3 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인정사실을 확인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전단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정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인정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 교부대장과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대장-----

-----.

2) 신설 및 개정 서식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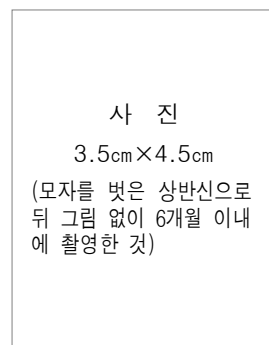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성 명 ;

생년월일 ;

인정일자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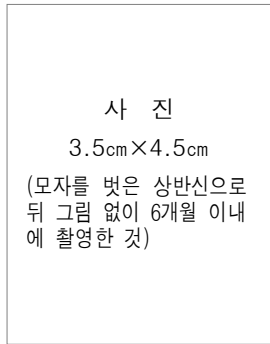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성 명 ;

생년월일 ;

인정일자 ;



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통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직인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명 칭			
구 분	[] 명예보유자	성 명	생년월일
	[] 전승교육사	주 소 (전화번호:)	
재 교 부 사 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 난 · 분 실 · 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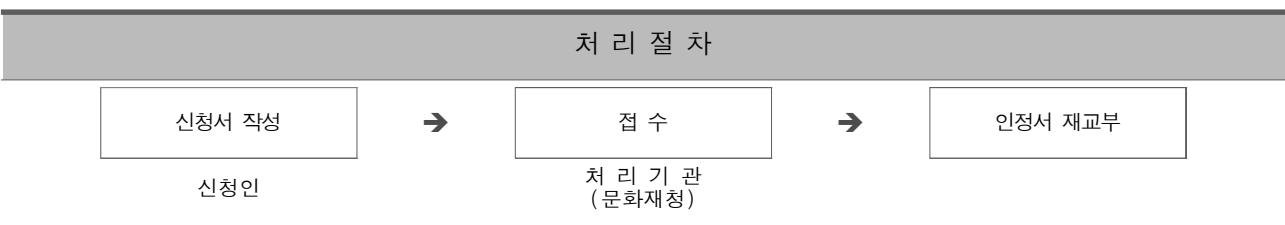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cm × 4.5cm) 1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유자 · 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전승교육사

교부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칭(제 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단체일 경우)	보유 기능·예능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명 칭			
구 분	[] 보유자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보유단체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용 도 (자 세 히 기 재 요 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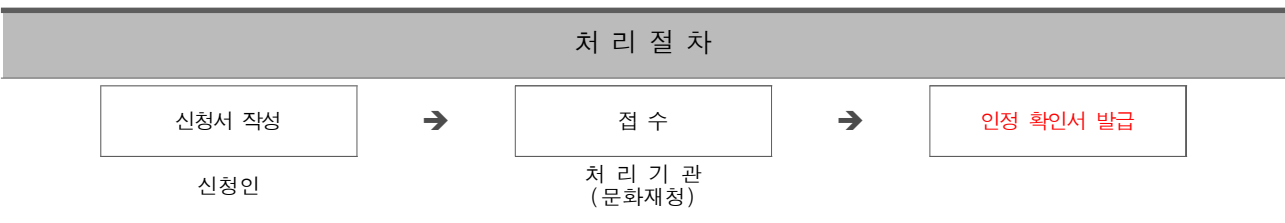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유단체 : 보유단체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종 목 ; 국가무형문화재 ○○○

전승자 구분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인 정 일 자 ;

인정서 번호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인정서 번호	인정일자	신청인		교 부 연월일	발급자
						관계	성명		

5.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정상화 추진현황 보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6.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등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등 9종목의 영문명칭(안)을 정비하였기 이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관련 규칙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의 개별 영문 명칭(안)을 정비하였기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다. 보고내용

- 1) 근거 :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예규 제213호)
- 2) 주요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안) 9건
 -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 : 6건
 - 김천금릉빛내농악, 남원농악, 삼베짜기, 사경장 ,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 기존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 변경 : 3건
 - 온돌문화, 전통어로방식 - 어살, 불복장작법,
- 3) 향후계획 :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게시 예정('21.4월)

-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안) 1부
2.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1부.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안)

[국가무형문화재, 9건]

연번	종목 / 번호	국문 명칭	영문 명칭	
			기존	변경(안)
1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2019.9.2.)	김천금릉빛내농악	-	Gimcheon Geumneung Binnae Nongak (Farmers' Performance of Binnae Village, Gimcheon)
2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2019.9.2.)	남원농악	-	Namwon Nongak (Farmer's Performance of Namwon)
3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 (2019.12.31.)	삼베짜기	-	Sambae Jjagi (Hemp Weaving)
4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2020.7.20.)	사경장	-	Sagyeongjang (Sutra Copying)
5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2020.7.30.)	활쏘기	-	Hwalssogi (Archery)
6	국가무형문화재 제143호 (2020.12.1.)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	Insam Jaebae and Yakyong Munhwa (Cultivation of Ginseng and Its Medicinal Application)
7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 (2018.4.30.)	온돌문화	Ondol Munhwa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Ondol (Underfloor Heating)
8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 (2019.4.23.)	전통어로방식-어살	Traditional Fishing - Fishing Weir	Eosal (Fishing Weir)
9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2019.4.30.)	불복장작법	Bulbokjang Jakbeop (Ritual Process of Placing Objects Inside Buddhist Statues)	Bulbokjang Jakbeop (Ritual of Placing Objects Inside Buddhist Statues)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 2013. 7. 26.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일부개정 2014. 10. 17.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일부개정 2017. 9. 8. 문화재청 예규 제183호
전부개정 2019. 11. 15. 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명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문화재의 이름을 말함.
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4. “명명 요소(命名要素)”라 함은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
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화재 명칭을 말함.
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문화재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문화재 명칭을 말함.
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호(號)·시호(諡號) 등을 말함.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표기 원칙

제4조(기본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5조(일반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
2.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
4. 기관·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5. 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
6.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
7. 띄어쓰기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제1절 공통 사항

(생략)

제2절 유형별 표기 기준

(생략)

제25조(무형 문화재)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보기]

-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 옥장 玉匠 Okjang (Jade Craft)
-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
-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 나주의 섯골나이 羅州의 섯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
-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후략)